

전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275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진현덕

피고B

변론 종결2021. 4. 20.

판결 선고2021. 5.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048,8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막걸리 공장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람이고, 소외 C은 원고로부터 막걸리를 납품받아 D(변경 전 상호 E)이라는 막걸리 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소외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C에게 막걸리를 납품하였는데 원고와 C은 2013. 7. 1. 미지급 물품대금을 원인으로 한 차용증서(20,000,000원)를 작성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대금을 정산 및 확인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C에게 계속 막걸리를 납품하고 못 받은 대금이 7,812,000원에 이른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8. 3. 15.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1.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31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완주군청 및 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일(2018. 3. 15.)이나 이 사건 이전등기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이전등기 사실 및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C에 위 물품대금 채권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9. 3. 합계 27,812,000원의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C과 동거하지 않아 C의 채권채무 관계나 신용상태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C에 대한 13,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 등기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

- 1) 관련 법리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다만,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치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7. 13. 접수 제75805호로 전주시의, 2017. 4. 7. 접수 제35681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C이 채무자이고 G조합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35,100,000원의 근저당권과, C이 채무자이고 H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날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압류가 해제된 사실, 피고가 위 압류 해제를 위하여 전주시에 6,564,2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487,140원을 각 변제한 사실, G조합의 경우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27,000,000원, H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20,000,000원(확인이 안되므로 채권최고액으로 정함)인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84,44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9.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86,100,200원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우선변제되어야 할 압류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9. 22. 당시 가액인 86,100,200원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주시의 압류금액1) 6,564,26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금액2) 9,487,140원,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피담보채권액 27,000,000원, 근저당권자인 H의 피담보채권액 20,000,000원의 합계 63,051,400을 공제한 나머지 23,048,800원이 된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은영

별지

1)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단서 생략).

2)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단서 생략).